

TV 토론 담화 분석을 통한 논증 도식 유형화

서영진*

<차례>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대상 및 방법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V. 결론

I. 서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의사소통 문화에서 관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논증 도식을 유형화해 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논증적 소통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TV 시사 토론 담화를 분석하여 논증 도식의 활용 양상을 분석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¹⁾

논증 도식은 논거로 진술된 것과 주장으로 진술된 것 간의 관계를 표상하는 관습적인 방식이다. 논증 도식은 필연적으로 논증적 의사소통 참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학 박사과정 수료

1) 필자는 ‘논증적 상호 교섭 전략으로서 논증 도식 유형에 대한 연구(2011)’에서 논증적 의사소통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를 바탕으로 논증 도식을 분류하는 기준을 체계화하고 논증 도식 유형을 새롭게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 논리를 바탕으로 한 가설 연역적 접근 방식을 취한 연구였다. 이에 본고를 통해 졸고(2011)의 논의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을 아울러 하고자 한다.

여자의 사고 과정을 반영한다. 이에 화용·대화론적 관점에서는 논증 도식의 운용에 따른 절차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논증의 질을 판단하였다. 청중의 반응을 중시하는 신수사학적 관점에서도 논증 도식의 운용 양상에 따라 청중에 대한 논증의 설득력을 평가하였다.(민병곤, 2004 : 61)

논증 도식은 자신의 논증을 생성하고 조직하거나 상대방 논증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논증 도식은 논증자에게 주장을 정당화하는 다양한 추론 방식을 알려줄 수 있다. 즉 논거와 주장 간의 관습화된 논리적 지지 관계 유형을 알고 있으면, 타당성과 설득력을 확보한 논증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구성해낼 수 있다. 한편 논평자에게는 상대 논증의 설득성과 합리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논평자는 상대 논증에 대해 비판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의문은 논증 도식 각각의 고유한 논리 특성에 따라 달리 구성되어야 하므로 논증 도식에 대한 인식은 상대 논증에 대한 비판적 회의와 건설적 논박의 출발이 된다. 그러므로 논증적 소통 상황에 직면한 학습자들이 논증 도식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학습자들은 논증 행위에 대한 인지적 부담을 줄이고 논증 운용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논증 도식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논증 교육 내용으로 도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교육은 실천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특히 의사소통 교육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전이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데, 기존 논의에서 제안된 논증 도식은 이를 보장할 수 없다. 기존 논의들은 실제 논증에 대한 귀납적 분석으로부터 추출된 것이기보다 이론적·논리적 정합성에 기대어 제안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논의자마다 각자의 기준을 바탕으로 논증 도식을 상이하게 제안하고 있어 합의 안을 도출하기도 쉽지 않다. 이론적 타당성이 높다고 알려진 논증 도식 분류라 하여도 학습 가능성·적용 수월성·전이성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학습자들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고 적용해 볼 수 있는 논증 도식, 실제의 논증적 소통 상황에서도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 학습 가치가 높은 논증 도식을 선정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류 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논증 도식에 대한 교육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기초 연구로서, 실제 논증적 소통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논증 도식을 유형화해 보고자 한다. 즉 한국적 논증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논증 도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 논증의 실천 주체로 성장할 학습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효용 가치가 높은 논증 도식을 선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실제 논증 담화 자료로서 TV 시사 토론 프로그램의 담화를 전사하여 분석하였다.²⁾ 논증 메시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논리 구조적 관계나 전제에 활용된 설득 기제의 특징들을 추출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징을 가진 것끼리 일정하게 묶고, 그 중 관습적으로 활용되는 방식들을 논증 도식으로 유형화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논증 도식 유형 분류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고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다. 가장 널리 알려진 논의는 Perelman & Olbrechts-Tyteca(1969), Eemeren & Grootendorst(1992), Kienpointner(1992)이지만, Breton(1996)과 Walton, Reed & Macagno(2010)의 논의도 주목할 만하다. 널리 알려진 논의들에서 제안한 논증 도식 종류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논증 도식에 대한 분류 논의

Perelman & Olbrechts-Tyteca(1969)	Eemeren & Grootendorst(1992)	Kienpointner(1992)
1. 결합의 형식	1. 징후 논증	1. 보장을 사용하는 도식
1.1 준 논리적 논증	2. 인과 논증	-포함 도식
-비양립성 동일성 정의	3. 유추 논증	-비교 도식
-정당성 추이성 비교		-대당 관계 도식

2) TV 토론 담화가 한국적 논증을 대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논증적 소통의 단면들을 포착하여 그 양상의 일반적 특징을 밝히는 미시적 논의가 축적되어야 한국적 논증 문화 전반에 대한 거시적 논의도 가능해 질 것이다.

1.2 이미 연결된 경우 -연속적 관계 -동시적 관계 1.3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경우 -예시 -모델 -유사 -예증 -은유 2. 분리의 형식	-인과 도식 2. 보장을 만드는 도식 -귀납적 예시 도식 -설명적 예시 도식 3. 유추 도식 4. 권위 도식
---	---

Perelman & Olbrechts-Tyteca(1969)의 유형 분류는 정교하고 세밀하다. 하지만 분류 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학습자들이 익혀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평가이다. 아무리 정교하고 상세한 분류라도 그 사용이 전제되지 않는 것은 교육적 가치가 떨어진다.

Eemeren & Grootendorst(1992)의 논증 도식은 간명하고 포괄적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범박하여 개별 논증을 생산하고 수용하는 틀로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박승억 외(2005)의 분류에 따르면 ‘정후, 유추, 인과’에 의지한 논증은 모두 귀납 논증의 하위 형태로, 이 분류는 일상적 논증 상황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연역 논증과 같이 귀납 논증 이외의 방식을 포괄하지 못한다.

Kienpointner(1992)의 분류 방식은 포괄성과 설명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면서(민병곤, 2004 : 64) 논증 교육 관련 논의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Walton(1996 : 46)에 따르면, Kienpointner(1992)의 분류는 추상적 차원의 일반화에 의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입시키기 어렵다. 실제로 Kienpointner(1992)의 논증 도식을 토대로 학습자들이 생산한 논증 담화 및 논증 텍스트를 분석한 민병곤(2004), 김인애(2007), 권희경(2008) 등을 살펴보면 포함 도식이나 반대 도식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그 분류 기준이 모호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보장을 만드는 도식의 경우, 보장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그치느냐와 이끌어 낸 보장으로부터 결론까지 도출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지만, 이 둘은 기본적으로는 구체적 사례를 일반화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변별력이 떨어진다.

한편 Breton(1996)은 논증을 통한 설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거로 사용된 전제가 수신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라 보고, 수신자의 동의를 이끌

어내는 설득 기제로부터 논증 도식을 추출하였다. Breton(1996)은 수신자로부터의 동의는 공명, 호기심, 이익으로부터 얻어진다고 보았다. 공명은 우리가 이미 세상에 대해 지니고 있는 관점, 즉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익숙해져 있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입각하여 공감을 일으키는 것이다. 호기심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변화에 대한 욕구와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 탐험에 대한 지향을 자극하여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다. 이익이란 논거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내·외적 이익을 통해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Breton(1996 : 41~42)은 이 설득 기제들을 바탕으로 논증의 유형을 권위에 의한 논증, 공통 전제를 사용한 논증, 프레임 재설정의 논증으로 나누었다.

‘권위에 의한 논증’은 권위를 활용하여 수신자에게 제시된 것이 개연적이고 받아들일만한 것이라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공통 전제를 사용하는 논증’은 공동체가 함께 지니고 있는 공통의 견해나 가치, 믿음을 사용하여 논증하는 것이다. ‘프레임 재설정의 논증’은 가치의 변화를 꾀하는 논증이다. 재설정이란 현실을 정면에서 보지 않고 우회하여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수신자에게 새로움을 주며, 새로운 질서를 생성하게 한다. 다만 이 새로움은 전혀 동떨어진 새로움이 아니라 기존의 것과 관련성을 갖는 새로움으로, 재설정의 논증에는 ‘정의’, ‘표현’, ‘결합과 분리’의 세 범주가 있다. ‘정의’는 특정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 속성 중에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속성을 하나 선택하고 그것의 개념을 창의적으로 재설정하는 것이다. ‘표현’이란 표현법을 달리하여 설득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결합’은 기존의 요소들을 새롭게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고, ‘분리’는 하나의 세계를 두 개로 구분하여 새로운 세계를 생성하는 것이다.

Breton(1996)의 논증 도식은 수신자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설득의 기제에 대한 고찰로부터 출발했다는 점,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최상위 분류 기준을 기준 세계의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것과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간결 명료화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각 유형 간 층위가 위계적이지 못한 한계는 남아있다. 권위에 의

한 논증은 공통 전제의 논증 속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 프레임 재설정 논증의 하위 유형 중 표현법을 달리하는 것은 다른 하위 유형과 충돌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권위에 의한 논증과 공통 전제를 사용한 논증은 공명이라는 설득 기제에 기반한 것이며, 프레임 재설정의 논증은 호기심에 기반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익에 기반한 논증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Walton, Reed & Macagno(2010)는 일상생활 속에서 전개되는 논증을 비롯하여 법정 논증이나 과학적 논증 등 전문적이고 특수한 논증까지 고려하여, 거의 모든 논증 도식을 개괄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여러 연구자들이 제안해 왔던 논증 도식 이외에, 비형식논리학에서 다루어 왔던 오류 유형, 상대의 감정·성격·지위·처지 따위에 호소하는 대인 논증(argumentum ad hominem)까지를 집대성하여 논증 도식의 개념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Walton, Reed & Macagno(2010)가 제시한 논증 도식은 전문가의 의견에 기대는 논증 도식, 여론에 기대는 논증 도식, 유추에서 비롯된 논증 도식, 원인과의 상관관계에 의한 논증 도식, 긍정적인 결과에서 출발하는 논증 도식, 징후에서 비롯된 논증 도식 등 총 60개에 달한다. 하위 유형들까지 고려하면 총 101개의 논증 도식을 제안하였으며, 각 논증 도식의 개요와 비판적 의문 목록도 함께 제시하였다.

Walton, Reed & Macagno(2010)의 논증 도식들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전제의 성격에 따라 그 이름을 붙이고 하나의 유형으로 간주한 것들로 일정한 분류 체계나 기준이 없다. 언제든지 이합집산 할 수 있는 것들의 총체이다. 일정한 체계나 기준없이 나열하다 보니, 결론과 전제의 논리적 추론 관계가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삭제 가능한 도식도 있고, 유용 가치를 재고할 만한 도식도 있다. 하지만 각각의 논증 도식마다 일정한 형식 개요를 제공하고, 해당 도식을 사용한 논증을 평가하기 위한 비판적 의문 목록을 제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타 논의의 논증 도식 유형들은 학습자들이 구체적 전략으로 활용하기에 추상성이 강한데 반해, Walton, Reed & Macagno(2010)가 제시한 논증 도식은 그 분류의 수준이 구체적이고, 논증의 내용적·형식적 틀로서 삼단 개요를 제공하고 있어 전

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101개에 달하는 논증 도식 중 많은 수의 논증 도식이 추정을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취하는 것들이라는 점도 특징적이다.

그 외 Ehninger & Brockridge(1960)은 논증을 현실의 구조에 근거한 논증 (원인, 정후, 일반화, 상황의 상관관계, 유추, 분류), 권위에 의한 논증, 한 사람의 동기나 욕구에서 이끌어낸 논증으로 구분하였다. Fasol(1989)는 권위 논증, 인과 논증, 예시 논증, 귀납 논증, 연역 논증, 유추 논증을 제안하였다. Vines(1999)는 권위 논증, 반박 논증, 원인 논증, 모델 논증을, Freeley & Steinberg(2005)는 예에 의한 추론, 유추에 의한 추론, 인과 추론, 기호적 추론을 논증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이광모·이황직·서정혁(2006)은 일반화에 의한 논증, 원인과 결과에 의한 논증, 유비에 의한 논증, 권위에 의한 논증, 표본에 의한 논증을 제안하기도 하였다.³⁾

III. 연구 대상 및 방법

논증 도식의 유용성을 인정하여 그것을 논증 교육 내용의 일부로 다루고자 할 때, 상기에서 언급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고려하되,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논증 도식을 추출하는 작업이 별도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실제 한국적 논증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논증 도식을 분석하여 일정한 유형을 추출하는 것이다. 그 후 학습 가능성, 적용 수월성 등을 고려하여⁴⁾ 실제 활용되고 있는 도식 중에서 교육적 가치

3) 한편 졸고(2011)에서는 논증적 소통 행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논증 메시지·논증 참여자·논증 맥락을 기반으로 논증 도식을 분류하였다. 메시지 내용의 내적 추론 관계로부터 논리적 정합성을 확보하여 설득하는 유형·참여자의 심리나 의도에 기대어 설득하는 유형·소통 행위 외부에 존재하는 상황 맥락에 기대어 설득하는 유형에 따라, 논증 도식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제안된 주요 논증 도식들을 재분류하였다.

4) 가능을 기르기 위해 동원되는 전략을 제시할 때 고려해야 할 원리로는 목표 수행성·적

가 높은 논증 도식을 선정하고 위계화해야 한다.

본고는 이를 위해 요구되는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실제 논증 담화 자료로서 KBS의 생방송 심야 토론·MBC의 100분 토론·SBS의 시사 토론을 연구 대상 자료로 선정하여 실제 논증적 소통에서 활용되는 논증 도식을 분석하였다. 2008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방영된 토론 중에서, 찬반 대립이 분명한 정책 논제 토론을 선별하였다. 방송 토론의 특성상 찬반 대립이 뚜렷하지 않은 논제를 다루는 토론의 경우, 논의의 초점이 흐려지고, 논증이라고 보기 어려운 메시지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논증의 정도도 치밀하기 못했다. 이에 찬반 대립 논제로 초점화하였다. 한편 정책 논제는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를 두루 포함할 수 있기에,⁵⁾ 정책 논제를 다룬 토론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자료 선정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선정한 자료는 총 16편의 토론으로,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1차 연구 대상 자료

연번	방송사	방영 일시	논 제	전사 분량
1	MBC	2010. 7. 8.	다시 불붙는 4대강 사업 논란	48,587자
2	SBS	2010.10.29.	4대강 사업 정면 충돌!	40,734자
3	KBS	2011. 1.22.	복지 논쟁, 올바른 선택은?	46,360자
4	SBS	2011. 1.14.	무상복지 논쟁, 누가 옳은가?	41,889자
5	SBS	2011. 7.22.	영리병원 허용해야 하나?	36,307자
6	MBC	2011. 7.21.	영리병원 약인가? 독인가?	41,406자
7	KBS	2010.10.16.	교원단체 정치참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1,332자
8	KBS	2009. 2.14.	사형제도, 존치해야 하나? 폐지해야 하나?	43,869자

용 수월성·전이성 등이 있다. 목표 수행성은 어떤 전략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의 정도를 나타낸다. 적용 수월성은 학습자가 지도 내용으로 제시된 전략을 쉽게 학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전이성은 하나의 전략을 학습했을 경우 그 전략이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정도이다. 국어과 교육의 내용으로 다룬 전략은 그 자체가 하나의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험하게 될 다양한 상황에서도 적용되도록 해야 효과적이기 때문이다(최영환, 1997 : 166~167).

5) 정책 논제에 대한 논증은 논증의 상당 부분을 사실이나 가치에 대한 논란이 차지한다.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사실적 판단이 요구되고, 정책을 실시했을 미래에 대한 예측과 가치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연번	방송사	방영 일시	논 제	전사 분량
9	KBS	2010. 2.20.	불붙은 낙태 논쟁, 생명권인가 선택권인가?	45,451자
10	KBS	2010. 3.20.	학교 무상급식, 어떻게 할 것인가?	38,449자
11	MBC	2010. 3.11.	무상급식, 왜 논란인가?	44,624자
12	KBS	2010. 7.24.	학교체벌, 사랑인가 폭력인가?	44,051자
13	MBC	2011. 1.20.	학교는 고민 중, 체벌 허용 논란	41,219자
14	KBS	2011. 4.21.	게임 중독과 '신데렐라 법'	47,793자
15	KBS	2011. 6.11.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논란	43,148자
16	SBS	2011. 1.21.	감기약·진통제, 약국에서만 사야 하나?	41,678자

전사는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토론 동영상 파일을 바탕으로 하였다.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극본식 표기법에 따랐다. 발화문들을 대화 참여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정리하고, 표기 방법은 발음대로 적지 않고 맞춤법에 맞추어 전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6편의 전사 자료 중 1~7의 토론은 토론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논증을 펼치기보다 이유나 근거 없이 주장만 내세우며 중언부언하는 경우가 잦았다. 논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실 관계 확인에 치중하거나, 정당 간 감정적 대립 구도를 형성하며 상호 비방하는 장면도 많았다. 이로 인해 사회자의 중재 발언이나 논제로의 초점화 요구 발언이 자주 개입하는 등 논점이 흐려지는 경향이 심했다. 이는 주장과 이유의 논리 관계나 설득 기제를 고려하여 논증 도식을 유형화해보고자 하는 본고의 연구 자료로는 부적절하여 최종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8~16의 자료 중에는 동일한 주제를 논제로 삼은 토론도 있었다. 동일 논제를 다루는 토론의 경우, 토론 참여자들이 제시하는 근거나 논리 전개 방식이 유사했으며, 동일인이 각 방송사의 토론에 중복 출연하기도 했다. 언어 자료를 분석하여 어떤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특정 언어 생산자의 개인적 성향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하나의 토론만을 선택해야 했다. 한편,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 차이로 인한 변인이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해야 했다. 이에 동일한 논제를 다루는 토론은 하나만은 선택하되, 진행 방식이 동일한 한 방송국의 토론을 중심으로 선

택하였다. 결국 11, 13, 16의 자료는 제외하고, 8, 9, 10, 12, 14, 15의 토론자료(총 262,761자 분량)를 최종적인 연구 대상 자료로 선정하였다.

<표 3> 최종 연구 대상 자료

구분	방송사	토론일시	논제	전사분량
A	KBS	2009. 2.14.	사형제도, 존치해야 하나? 폐지해야 하나?	43,869자
B	KBS	2010. 2.20	불붙은 낙태 논쟁, 생명권인가 선택권인가?	45,451자
C	KBS	2010. 3.20.	학교 무상급식, 어떻게 할 것인가?	38,449자
D	KBS	2010. 7.24.	학교체벌, 사랑인가 폭력인가?	44,051자
E	KBS	2011. 4.21.	게임 중독과 '신데렐라 법'	47,793자
F	KBS	2011. 6.11.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논란	43,148자

전체 논증에서 논제 관련성과 입증 관련성을 확보한 개별 단위 논증 메시지에서 주장과 이유를 찾고, 이유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는지 살폈다. 특히 주장과 이유의 논리적 추론 관계 및 설득 기제의 특징을 분석하여, 공통점을 추출하고, 이를 일정하게 유형화였다. 이 때 하위 논증 메시지들이 결합하여 확장된 복합 구조의 상위 논증까지 분석 단위로 삼지는 않았다. 상위 논증을 고려하게 될 경우 하위 논증과 중복될 수 있고, 상위 논증과 하위 논증을 구분하는 경계가 상대적이라 분석 결과가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본 구조의 하위 논증에서는 인과 논증이었던 것이 상위 논증에서는 정후 논증이 되고 최상위 논증에서는 연역 논증으로 확장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하위 논증들을 분석 단위로 하였다.

아울러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유형화된 논증 도식의 사용 비율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TV 토론 논증에서 선호하는 논증 도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논증 도식 유형별 사용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6편 토론에 사용된 논증 도식의 총 개수가 필요한데, 이는 일정하게 유형화 가능한 논증 도식의 전체 개수로 하였다. 일정하게 유형화하기 어려운 추론 관계 및 설득 기제가 포착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극히 드물게 나타나 관습적 도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체 개수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담화 내용 중 사회자가 논제와 관련된 정책 수립의 과정이나 논제 설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정보 전달 목적의 발화이므로 논증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논증의 전개를 안내하는 발언, 앞서 제시된 논증에 대한 부연 설명, 비슷한 내용의 반복적 발화는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핵심적 내용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논제 관련성 및 입증 관련성이 떨어지는 수사학적 기교, 인신공격 등의 상호 비방 발화는 그것이 논증의 구조를 떠고 있다 하더라도 논증 도식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논증 도식의 유형화 및 유형별 사용 비율

1.1. 제1유형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논리 전개 방식은, 통계 자료나 직접·간접 경험 사례를 제시하고 그것의 일반화 시도를 통해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다. 모델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제시하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하려고 시도하는 것 역시 구체적인 사례의 일반화를 통해서 설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같은 종류로 유형화할 수 있다.

A 072⁶⁾ : 오판 가능성 아주 예외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미국 사법 통계국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자료입니다. 1973년부터 2004년까지 만 30년 동안 통계를 내서 보니까 그 동안 사형수로서 복역

6) ‘A 072’란 A 토론 중 말차례 순서 교대에 의해 72번째 발화된 내용이라는 것을 의미함. A~F라는 각각의 기호가 가리키는 토론은 <표 3>을 참고 바람.

하다가 결백이 입증이 되어서 석방이 된 사형수가 무려 119명 이었습니다.

E 003 : 한국입법학회가 올해 3월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6%의 학생들이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시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온라인 게임을 하겠다 내지는 온라인 게임이 아닌 다른 게임을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게임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게임 셧다운제를 실행한다고 과연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게임 플레이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F 008 : 7, 80% 되시는 분들이 약국이 문을 닫는 그 심야나 주말에 엄청난 불편을 겪으신다고 그런 것들이 조사로 나와 있습니다.....

C 086 : 저희가 이제 운영회 이제 보면은 엄마들 의견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럼 저소득 가정에서 입증하는 아까 그 서류들 뭐 수치스럽지 않다고 어느 국회의원이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밑바닥의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보시면 그 엄마들 굉장히 가슴앓이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D 091 : 제 개인적인 경험담으로는 제가 고등학생일 때 담임 선생님께서 몇몇 문제아들을 계도하려고 일정 성적을 달성하면 이제 체벌을 안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시험 본 후에 그 달성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반에서 타의 모범으로 칭찬해 주셨고 못한 애들한테는 약속대로 그 체벌하시고 훈계하셨는데요, 그 뒤에 효과가 나타나서 그 문제 다른 문제 학생들도 그 자극을 받아서 같이 성적을 올리는데 일조했고 학우들끼리 사이도 더 좋아졌습니다.

F 041 : 예를 들어 제가 약국 가서 소화제 주십시오 박카스 주십시오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냥 줍니다. 이른 바 복약지도라는 거 없이 약국 가셔서 달라고 그러면 그냥 줍니다. 이런 거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C 023 : 스위스나 벨기에 같은 나라는 아예 그 저 다 무상급식이 없습니 다. 핀란드나 스웨덴은 5만불 약간 넘는데 노르웨이는 9만5천불입니다. 그 나라는 무상급식은 없고 과일만 제공합니다.

D 021 : 선진국들은 대개 법률상으로나 그 밖의 사항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어요. 영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A 072는 오페라 사례 수에 대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오페라 가능성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형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E 003은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하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을 것이므로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⁷⁾ F 008은 약국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 많다는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한다. 이것들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보여줘 주장을 정당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계 자료의 활용은 구체적 사례를 수치화하여 일반화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C 086은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상 급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낙인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상대 토론자에게 선별 급식으로 인한 낙인감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 경험으로 증명해 보인다. D 091는 체벌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토론자 자신의 직접적 경험을 바탕으로 입증하며 체벌에 찬성하는 논증을 하고 있다. F 041은 약은 약국에서 복약 지도를 받고 사야한다고 주장하는 상대 토론자에게, 약국에서 복약 지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반박하는데, 자신의 직접 경험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토론자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를 일반화시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에 논거로 활용하는 것이다.

C 023은 우리나라에서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국민소득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무상 급식은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즉 복지국가로 알려진 북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무상 급식 전면 실시는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일반화하고자 한다. D 021 역시 선진국에서는 체벌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체벌은 보편타당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고 일반화하고 체벌 금

7) A 072와 E 003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는 점에서 권위 도식의 사례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사례는 권위 있는 타자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 진다는 것에 기대어 설득력을 확보하려는 일환에서 해당 기관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기보다, 그 기관에서 발표한 사례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일반화를 시도하고 그것을 주장의 정당화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귀납 도식의 사례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지를 주장한다. 이들 사례는 모두 모델이 될 만한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그 사례를 보편화당한 것으로 일반화시켜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유형들은 일반적으로 ‘귀납에 의한 논증’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 대상 토론 담화에서 추출한, 일정하게 유형화 가능한 논리 전개 양상 총 368개 중 귀납의 방식을 활용한 경우는 총 100건이었다. 귀납 논증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는데, 귀납 논증이 차지하는 비율은 27.17%이다. 귀납 논증은 논제의 구체적 내용과 상관없이 6편 토론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활용되었다. 각 토론에서 귀납 논증이 사용된 비율은 다음과 <표 4>와 같다.

<표 4> 귀납에 의한 논증의 사용 현황

구분	A 토론	B 토론	C 토론	D 토론	E 토론	F 토론
귀납/전체(개수)	21/70	9/43	17/64	20/73	16/64	17/54
사용 비율(%)	30.00	20.93	26.56	27.39	25.00	31.48
활용 빈도 순위	1위	1위	1위	1위	1위	1위

귀납 논증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된 이유는 토론 참가자의 전문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TV 시사 토론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대부분 논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 단체 대표, 교수, 국회의원 등으로 관련 통계 정보와 사례를 수집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TV 토론의 청중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들인데, 토론 참여자들은 보편적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논증이 귀납 논증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1.2. 제2유형

두 번째로 많이 활용하는 논리 전개 방식은 이미 널리 알려진 상징성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징후를 바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잠정적인 결론을 추론해 내는 것이다.

A 138 : 가석방 해줄 거냐 말 거냐는 결정은 지금까지 그토록 사형 폐지 반대해왔던 법부무가 결정을 합니다. 재범에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특히 법무부가 유기징역이건 무기징역이건 가석방 해주는 데 대해서는 무지무지 인색한데 제가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진 않지만 굉장히 인색했던 것이고 특히 유기징역 같은 경우에 가석방이라는 게 불과 만기 출소 2개월 3개월 앞에서 겨우 해주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무조건 가석방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신형 제도는 안 된다는 말씀은 곤란합니다.

B 063 :태아부터 생명이라는 것은 배속에 있을 때부터 이 생명으로 존중해 왔습니다.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한 살로 쳤던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C 050 : 대통령 되실 때 공약한 것이 학교 민족 두배입니다. 그런데 2009년에 39조 2천억원이 교육예산에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2010에는 오히려 줄어 가지고 37조 8천억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 주소가 관련 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A 138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면 가석방 가능성으로 인해서 살인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재반론이다.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살인자가 가석방될 가능성 이 있다 하여도, 그 동안 법무부의 가석방 집행 방법 등 여러 가지 징후를 고려하면 그런 일은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상대방을 반박하는 것이다. B 063은 어느 단계부터 생명으로 간주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의 상징성을 근거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명관을 추정하고 태아부터 생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C 050은 교육 예산이 삐闾된 징후를 바탕으로 대통령은 공약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추정해 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으로 ‘징후 논증’으로 알려져 왔다. 징후 논증은 확인 가능한 징후를 바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잠정적인 결론을 추론하는 것이다.

한편 여러 가지 현실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특정한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논리 전개 방식도 징후 논증과 유사하다.

C 049 :무상교육 범위 속에 급식비를 포함하는 것이 우리가 돈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재정 여건만 좋다면은 수익자 부담 경비를 모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익자 부담 경비가 지금 한 5조원 이상 됩니다. 그 돈을 지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D 085 :학생의 권리나 권한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선생이 그거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교실 붕괴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F 067 :수퍼에 기존에 약국에서 파는 약을 간단히 넘기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그 사람 물론 교육을 하고 나중에 잘못되면 수거 문제도 있고요 포장도 지금 약국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생산 스케일도 바꿔야 되고, 엄청난 사회적 고통도 따를 뿐더러 제약회사도 어떻게 해야 되며 또 거기에 오남용 문제, 국가적 인프라 문제, 하나하나 따져 봐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C 049는 무상 교육의 기본적인 취지는 인정하지만,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전면적 무상 급식을 반대한다. D 085는 체벌을 금지하려는 기본 취지로서 학생 인권 존중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최근 교실 붕괴 현상을 고려하면 체벌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F 67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고 있다.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제도 실행을 통한 이익보다 더 많이 요구된다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며 약국 외 판매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을 추정해 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새로운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사용한다. 새로운 제도 및 정책이 타당하며 유용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정책 시행을 둘러싼 현실적 조건을 감안할 때, 그것의 도입과 정착은 불가능하며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추정하는 식으로 전개된다. 하지만 문제적 사태의 심각한 징후들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

장할 수도 있다. 결국 추정을 바탕으로 하는 논증은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시하는 전제 및 논거가 상대방의 논거를 압도한다는 논리로 전개되는 것이다.

이들 방식은 정후 논증과 함께 모두 ‘추정에 의한 논증’이라 할 수 있다. 즉 확인 가능한 정후나 현실적 정황을 근거로 확인 불가능한 현재 상황이나 미래를 추정하기 때문이다. 일정하게 유형화할 수 있는 논리 전개 양상 총 368개 중 추정의 방식을 활용한 경우는 총 61개이다. 전체 논증 도식 중 추정 논증이 차지하는 비율은 16.57%이며, 각 토론에서 추정 논증이 사용된 비율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추정에 의한 논증의 사용 현황

구분	A 토론	B 토론	C 토론	D 토론	E 토론	F 토론
추정/전체(개수)	8/70	7/43	9/64	14/73	11/64	12/54
사용 비율(%)	11.42	16.27	14.06	19.17	17.18	22.22
활용 빈도 순위	4위	3위	2위	2위	2위	2위

추정 논증은 6편 토론 중에서도 F토론 일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찬반 토론에서 많이 활용되었다. 반면 사형 제도 찬반을 다룬 A토론에서 추정 논증이 활용된 비율은 F토론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추정 논증의 논리 전개 방식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상 급식, 학교 체벌, 인터넷 게임 셧다운 제도,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등 일반 시민들의 현실 생활과 밀접한 생활 밀착형 논제는 제도 도입을 필요로 하는 현실적 요구,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제반 여건 등에 대한 쟁점이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정에 의한 논증이 많이 활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3. 제3유형

세 번째 입증 방식은 보편적 다수로부터 ‘진리임직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전제를 바탕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이미 전제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상대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즉 전제가 결

론을 연역적으로 합축하고 있음을 드러내어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식이다.

A 026 : 우리가 생명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대상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크게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이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의 가치는 누구든지 동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주는 가운데서 생명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보장하진 않지만 생명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있고 범죄자라고 해서 예외를 둬서는 안 됩니다.

C 004 :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책을 무료로 주죠. 수업료도 면접니다. 바로 무상급식도 무상교육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의 권리이고 국가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E 112 :사람은 자야됩니다. 밤에 안 자면 낮에라도 자야 합니다. 밤에도 안 자고 낮에도 안 자면 죽습니다. 우리 애들 잘못하면 죽습니다.....

F 014 : 일반의약품에 대한 정의는 오남용에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또 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이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약품, 또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의약품. 그렇게 해 놓고 이 외의 것은 전문의약품이다라고 약사법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일반의약품이므로 안전성은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A 026은 생명의 절대적 가치는 예외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전제를 바탕으로 범죄자 역시 한 인간으로서 그의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어, 사형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C 004는 헌법에 제시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전제로 급식도 교육에 포함되므로 무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며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찬성하는 주장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E 112는 인간은 생명 유지를 위해 잡을 자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인터넷 게임은 건강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 F 014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그 정의가 연역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반대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반박한다.

이렇게 전제와 결론 간의 연역적 함축성을 바탕으로 한 논리 전개 방식은 타당성과 건전성을 염격한 수준으로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전제는 명정한 진리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진리임 직한 것이며, 전제나 결론은 경우에 따라 생략될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연역의 방식을 취하되, 완벽한 연역이 아니라 연역 논리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유사 연역에 의한 논증’이라 할 수 있다. 일정하게 유형화 가능한 논리 전개 방식 총 368개 중 유사 연역의 방식을 활용한 경우는 42개이다. 전체 논증 도식 중 유사 연역 논증이 차지하는 비율은 11.41%이며, 각 토론에서 유사 연역 논증이 사용된 비율은 다음 <표 6>와 같다.

<표 6> 유사 연역에 의한 논증의 사용 현황

구분	A 토론	B 토론	C 토론	D 토론	E 토론	F 토론
인과/전체(개수)	8/70	8/43	7/64	8/73	5/64	6/54
사용 비율(%)	11.42	18.60	10.93	10.95	7.81	11.11
활용 빈도 순위	4위	2위	5위	3위	6위	3위

유사 연역에 의한 논증은 B토론 낙태 논쟁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B토론의 주요 쟁점은 태아를 인간으로 볼 수 있는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행복 추구권 중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논증에서 유사 연역 도식이 많이 활용되었다. 반면 E토론 인터넷 게임 셧다운 제도에 대한 토론에서는 유사 연역 도식이 많이 활용되지 않았다. E토론은 인터넷 게임 셧다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토론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1.4. 제4유형

네 번째 논리 전개 방식은 현상들 간의 인과적 상관성을 바탕으로 논증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A 014 : ……첫번째 사건을 초동수사에서 제대로만 했으면 이미 그 전에 정후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런 수사를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명 또는 6명의 무고한 생명을 사실은 앗아갔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B 025 : 낙태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실제로 임신중절수가 서로 서로 상호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상관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낙태 규제가 아주 없어도 낙태 수는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B 027 : 생명 윤리 교육이 제대로 학교뿐만 아니라 혹은 가정에서 제대로 이게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 생명에 대한 그 존엄성이 상실되고 있다고……

E 032 : 게임 때문에 밤새는 아이들이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잠자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이 아이들을 밤에 잠을 재울 것인가라는 접근에서 셧다운제도가 나오는 것이고……

E 115 : 게임중독인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공격 성향이 증가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인터넷 게임과 공격은 인과관계가 분명합니다.……

A 014는 흉악범에 의해 희생된 사람의 수가 증가한 원인을 초동 수사의 미흡으로 지목하고 범죄가 확대 재생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과 중심적 사형 선고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B 025은 낙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과 낙태 시술의 증감은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낙태를 규제하더라도 낙태는 감소되지 않을 것이므로 낙태 규제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B 027은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 의식을 상실하게 된 원인을 생명 윤리 교육을 소홀히 한 데서 찾고, 낙태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낙태를 법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생명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 032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 제도가 필요하게 된 문제의 원인을 추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E 115는 인터넷 게임과 아동의 공격 성향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둘 간의 인과 관계를 확신하고, 아동들의 공격 성향을 약화하기 위해서 인터넷 게임을 규

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상응하는 문제 해결 방안을 주장하고자 할 때 인과적 논리 전개 방식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와 결론 간의 인과성 관계에 기반하고 있는 이 유형은 ‘인과에 의한 논증’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권희경(2008 : 33)과 여정민(2011 : 2)에 의하면, 교실 토론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논증 도식이 바로 인과 논증이다. 하지만 전문가 패널들이 참여한 TV 시사 토론을 분석한 본고의 결과에서 인과 논증이 활용되는 비율은 귀납 논증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권희경(2008)과 여정민(2011)에서는 초등학생들의 논증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때문에’라는 표지를 근거로 인과 논증인지를 판단하여, 인과 논증이 많이 활용된다고 논의하였다. 인과성은 논리적으로 엄격하게 밝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담화 표지에 기대어 인과 논증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기는 하다. 하지만 ‘……때문에’라는 표지는 인과 도식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귀납이나 연역의 논리적 추론 과정에서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전체의 역할을 하는 문장을 이끄는 표지로 ‘……때문에’가 활용된다. 즉 ‘……때문에’는 인과 논증의 표지가 아니라, 이유나 전체를 이끄는 일반적인 표지이다.⁸⁾ 이에 본고에서는 논리적 추론 과정 및 설득 기제로 작용하는 전제에서 인과성이 분명한 것을 인과 논증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368개 중 인과 논증이 활용된 발화는 40개로 10.86% 정도였다. 각 토론에서 인과 논증이 사용된 비율은 다음 <표 7>와 같다.

<표 7> 인과 논증의 사용 현황

구분	A 토론	B 토론	C 토론	D 토론	E 토론	F 토론
인과/전체(개수)	5/70	7/43	6/64	7/73	11/64	4/54
사용 비율(%)	7.14	16.27	9.37	18.91	17.18	7.40
활용 빈도 순위	7위	3위	6위	4위	2위	5위

8) 인과적 상관성을 분명히 밝히기 어려워 ‘……때문에’ 표지를 기준으로 인과 논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논증 도식 분류 기준 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 여타 논증 도식의 유형 분류는 메시지들 간 내적 논리 관계를 기준으로 하되, 인과 논증은 표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다.

활용 빈도 순위를 기준으로 할 때, 인과 논증은 E토론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E토론은 인터넷 게임 셧다운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토론으로, 주요 쟁점은 제도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다.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논증, 문제적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상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논증에서 인과의 방식이 많이 활용되었다. 낙태 문제를 다룬 B토론에서도 인과 도식이 많이 활용되었는데, 낙태가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논증이 다수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A토론은 사형 제도에 대한 찬반 토론으로 인과적 상관성을 바탕으로 한 논증이 가장 적게 활용되었다. 사형 제도 자체의 보편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되면서 사형 제도가 필요한 원인을 인과적으로 분석하는 등의 논증은 많지 않았다.

1.5. 제5유형

다섯 번째 논리 전개 방식은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나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 기대나 부정적 기대를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A 044 :방어기제가 생긴다면 상징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억압을 받거나 거기에 대한 자제를 할 수밖에 없는 방어 기제가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겁니다.사형제도가 존재함으로써분명한 위화력이 전달되고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결론을 가질 수가 있는데.....

C 004 : 자의든 타의든 자기가 무상급식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은 아이들은 눈칫밥 먹게 됩니다. 학교 생활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무상급식이 선별적으로 하게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 마음에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C 028 :무상급식을 하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해야 하나, 교실에서는 공부 잘하고 못하고로 차별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급식소에서는 똑같은 밥상을 받고 있는 바로 이것이 평등이에요. 학생들이 존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돈보다 사람이 귀하다는 존엄함을 배

우고 있습니다. 존엄과 평등이 맞물려 학생 복지와 인권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거죠. 이런 무상 급식을 통해서 평등, 존엄, 복지, 인권 등 아주 중요한 철학들을 갖다가 우리 학생들이 몸에 익히고 그걸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C 071 : 무상급식 하면요 고용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소득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도 또 이 여러 가지 친환경 효과도 있고 뭐 등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D 008 : 체벌은 교육적 수단이 아니죠. 효과도 지속적이지 않아요. 학생의 자아존중감 상실 약화 이런 등 예기치 못한 부정적 효과가 너무 많죠……

E 009 : ……셧다운제를 하면은 충분히 잘 수 있는데, 충분한 수면은 결국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거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아이들의 성장과 발육과 학습권과 이런 것들을 다 그리고 아이들의 성격 형성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A 044는 사형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기대 효과를 근거로 사형 제도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C 004는 선별적 무상 급식을 실시하면 학생들이 낙인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선별적 무상 급식을 반대한다. C 028, C 071는 전면적 무상 급식을 실시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교육 효과 및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기대감 등을 근거로 전면적 무상 급식 실시를 주장한다. D 008은 체벌의 부정적 효과를, E 009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의 긍정적 효과에 기대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긍정적 혹은 부정적 기대감을 근거로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정하고 가정적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나 두려움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과거로부터 원인을 분석하여 인과적 상관성을 밝히려는 인과 논증과는 다르다. ‘기대감에 의한 논증’은 일정하게 유형화 가능한 논증 전개 양상 총 368개 중 34건에서 확인되었으며, 9.2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⁹⁾ 각 토론에서 기대감 논증이 사용된 비율은 다음 <표 8>와 같다.

9) 기대감에 의한 논증이 제5유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연구 대상 토론의 논제가 정책 논제였던 점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가치 논제 및 사실 논제에서는 기대감에 의한 논증

<표 8> 기대감에 의한 논증의 사용 현황

구분	A 토론	B 토론	C 토론	D 토론	E 토론	F 토론
기대감/전체(개수)	6/70	4/43	8/64	7/73	5/64	4/54
사용 비율(%)	8.57	9.30	12.50	9.58	7.81	7.40
활용 빈도 순위	6위	5위	3위	4위	6위	5위

기대감에 의한 논증은 C토론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무상 급식 자체의 정당성보다는 전면적 무상 급식을 실시했을 때 얻게 될 궁정적 효과, 선별적 무상 급식을 실시했을 때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들을 나열하는 방식의 논증이 많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1.6. 제6유형

여섯 번째 논증 전개 방식은 해당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신뢰할 만한 의견, 해당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을 만한 입장에 있는 이로부터 얻은 정보, 해당 사회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이론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식이나 관습,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의견이 모여 형성된 여론 등에 기대어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A 008 : 네, 지금 국제 엠네스티는 어제 13일에 아이린칸 사무총장 명의로 이명박 대통령께 공개 서한을 보내고 사형 집행을 재개하지 말 것을 탄원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인권의 이름으로 당연히 사형제도에 반대합니다.

A 042 : 미국을 비롯해서사형이 위화적인 효과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들이 다 모아져 있고 UN에서도 그렇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

C 045 :UN의 아동권리 협약을 보시면 다 알지 않습니까.거기에 우리나라로 다 협약에 비준을 했기 때문에 국내법과 효력을 같이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아이들은 생존과 보호와 발달과 그리고 참여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 있어요.

D 004 : UN의 아동권리협약이 발표된지 20년이 됐습니다. 그 중요한 내

유형은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를 검증하기 위한 후속 논의가 요구된다.

용으로 가정에서는 물론 학교에서도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D 014 : 교수학의 아버지 헤르바르트는 학생들의 지식 교육뿐만 아니라 품성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품성 교육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외적 훈육으로써 학생한테 직접 지시, 시범, 상벌 이런 걸로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고.....

E 009 :이 셧다운제에 대해서 대한수면학회에서는 어떤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PC 게임 접속 셧다운제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하시면서.....

E 059 : 잡을 안 자면 생명권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시간에는 더 제한해야겠다 그것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우리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을 포함해서 여론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E 113 : 헌법 제34조에 보면 국가가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등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는 차원에서 청소년에 대한 술이나 담배 이런 것을 금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셧다운제도도.....

F 142 :우리가 약을 약국 외에서 팔게 하는 것이 앞으로 좋겠다라고 OECD에서 한국에 보건의료개혁을 권유하면서 물론 권유하는 것 이긴 합니다만 국제적인 기구에 있어서 권유가 있었다.....

F 018 :국민의 80%가 원한다 이겁니다.....

이상의 사례들은 국제 엠네스티, UN, OECD 등의 국제기구의 권위, 헤르바르트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의 권위, 관련 학회의 권위, 헌법 등의 법적 권위, 오피니언 리더의 사회적 권위, 국민 여론의 권위 등에 기대어 주장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다수가 지지하는 명제나 전문가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명제는 일반적으로 이론의 여지 없이 충분히 받아들여 질 수 있으며, 보편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에 기대어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권위에 의한 논증’은 총 368건의 논증 중에서 33건에서 확인되었으며, 8.96%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각 토론에서 권위 논증이 사용된 비율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권위에 의한 논증의 사용 현황

구분	A 토론	B 토론	C 토론	D 토론	E 토론	F 토론
권위/전체(개수)	9/70	2/43	4/64	6/73	6/64	6/54
사용 비율(%)	12.85	4.65	6.25	8.21	9.37	11.11
활용 빈도 순위	2위	7위	8위	7위	5위	3위

권위에 의한 논증은 A토론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반면, C토론에서 가장 적게 활용되었다. A토론의 논제인 사형 제도에 대한 논란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논제에 대해서는 긴 시간에 걸쳐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며,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의견이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C토론의 논제인 무상 급식 논의는 한국 사회에 국한된 정책 논제로 최근에 와서야 논의되어 권위를 인정할 만한 근거나 견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 제7유형

일곱 번째 방식은 하나의 단위로 결합되어 있던 사태 및 생각을 두 가지로 분리하고 분리된 것들에 대한 상대적 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비를 옹호하는 것이다. 즉 분리된 것들의 차별적 속성을 강조하며, 둘 중 하나에는 보다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다른 하나에는 그보다 덜하거나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준의 가치 체계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당연시 해 왔던 것을 경계하고 가치의 우선 순위를 새롭게 제시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논증은 ‘정작 중요한 것은 A가 아니라, B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등의 형태로 진술된다. 이 방식은 어떠한 이유로 B에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하고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A와의 비교를 통해서 B에 대해 주목할 만한 계기, 각성의 계기를 마련하여 상대방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A 007 : ……인권과 관련된 여러 생명에 존중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소중하고 간절하고

절실한 것은 살인자들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던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인권 더 나아가서는 잠재적인 피해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인권이 더 소중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C 031 :무상급식 실시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육에는 아직도 무상급식 말고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시급한 곳에 투입을 해야 되지 무상급식은 오히려 한 단계 뒤에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A 007의 경우 인간의 생명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상대 주장에 대해, 살인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을 분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살인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C 031은 무상급식보다 더 요긴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함을 강조하고 하고 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에 동의하는 수신자들에게는 그 사실을 환기시켜 동의의 정도를 보다 강하게 만들어 준다.

이러한 방식은 현상과 현상 뒤에 숨은 실체 및 진실, 본성을 분리해 내어 수신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각성을 촉구하여 설득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단위로 뭉쳐져 있던 생각을 분리해 내거나, 기존의 가치 체계와 분리된 새로운 가치 체계를 형성하고자 시도하는 점에서 ‘분리에 의한 논증’이라 명명하고 유형화할 수 있다. ‘분리에 의한 논증’은 전체 논증 도식 368개 중 30개가 사용되었으며, 8.1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각 토론에서 분리 논증이 사용된 비율은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분리에 의한 논증의 사용 현황

구분	A 토론	B 토론	C 토론	D 토론	E 토론	F 토론
분리/전체(개수)	9/70	4/43	8/64	5/73	3/64	1/54
사용 비율(%)	12.85	9.30	12.50	9.58	4.68	1.85
활용 빈도 순위	2위	5위	3위	8위	8위	8위

분리에 의한 논증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토론은 A토론과 C토론이다. 앞서 예시 사례로 제시한 논의와 비슷한 논증들이 종종 등장했기 때문이다.

1.8. 제8유형

마지막 논리 전개 방식은 이미 널리 알려져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나 문제에 빗대어, 알려지지 않은 새롭게 주장하고자 하는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A 071 :일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예외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이런 오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동차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동차가 위험하니까 자동차를 없애자 이런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사고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자동차 운전하지 말게 하자는 거나 오편 가능성이 만에 하나 있으니까 아예 사형 없애자는 거나.....

B 045 : 그런 나라가 갖고 있는 인프라에 대한 노력과 논의는 하지 않고 그 나라에 보니까 법이 그 나라의 법이 규제를 안 하는 이유는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인프라가 와 있기 때문이지 거기서 그 밑의 인프라는 생각을 안 하고 법에 맞춰서 그건 마치 큰 옷을 입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 큰 옷을 입으면 저절로 키가 클 거 같다는 그런 착각인 거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E 008 : 아이들은 어른들이 보호해야 하는 거고 국가는 바로 그 사회 보장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과 아동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행복추구권을 준다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술이나 마약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 니네가 그러면 하고 싶은 것이니까 해라,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A 071은 오편으로 인해 무고한 피의자가 사형될 수 있으므로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논리를 자동차 사고에 빗대어 해석하고 있다. B 045는 사회 인프라 구축은 외면하고 법만을 강조하는 상대방의 논리를 큰 옷을 입고 싶어하는 욕심에 빗대고 있다. E 008은 아이들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셧다운 제도 도입

을 반대하는 것은 유해 물질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 기대어 상대방 주장의 부당성을 강조 한다. 이들 사례는 자명하게 수용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기대어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거나 수긍할 수 있는 경우에 기대어, 그것과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낯설고 불명확한 경우를 비교해 보이는 것은 ‘유추에 의한 논증’으로 알려져 왔다. 유추에 기초한 논증은 그 결론을 결정적으로 완전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도식이다. 총 368건의 논증 중 ‘유추에 의한 논증’이 활용된 경우는 28건이며, 그 비율은 7.60%였다. 각 토론에서 유추 논증이 사용된 비율은 다음 <표 11>와 같다.

<표 11> 유추에 의한 논증의 사용 현황

구분	A 토론	B 토론	C 토론	D 토론	E 토론	F 토론
유추/전체(개수)	4/70	2/43	5/64	6/73	7/64	4/54
사용 비율(%)	5.71	4.65	7.81	8.21	10.93	7.40
활용 빈도 순위	8위	7위	7위	6위	4위	5위

6편의 토론 중에서 유추에 의한 논증이 특징적으로 많이 활용된 경우는 없었다. 다만 유추에 의한 논증이 가장 적은 비율로 활용된 토론은 사형 제도를 다룬 A토론이었다. 인간의 생명과 인권에 대한 존엄성은 추상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가치를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추를 활용하여 상대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생명권과 인권이라는 존엄한 대상을 다른 것에 빗대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작용했을 것이다.

2. 논증 도식 유형에 대한 논의

관습화된 논증 도식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일정 빈도 이상 사용되

는 논리 전개 방식 및 설득 기제들을 유형화한 결과, 총 8개의 유형을 추출할 수 있었다. 8개의 논증 도식은 귀납·추정·유사 연역·인과·기대감·권위·분리·유추 도식이다.¹⁰⁾

일정하게 유형화 가능한 논리 전개 방식, 총 368건의 논증 중에서 27.17%가 귀납 논증, 16.57%가 추정 논증, 11.41%가 유사 연역 논증, 10.86%가 인과 논증, 9.23%가 기대감에 의한 논증, 8.96%가 권위에 의한 논증, 8.15%가 분리에 의한 논증, 7.60%가 유추에 의한 논증이었다.

각 토론의 논증 도식의 구체적인 활용 빈도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¹¹⁾

<표 12> 논증 도식 유형화 및 사용 빈도

구분	논제	귀납	추정	연역	인과	기대	권위	분리	유추
A 사형 제도	빈도(개)	21	8	8	5	6	9	9	4
	비율(%)	30.00	11.42	11.42	7.14	8.57	12.85	12.85	5.71
	순위	1	4	4	7	6	2	2	8
B 낙태 논쟁	빈도	9	7	8	7	4	2	4	2
	비율	20.93	16.27	18.60	16.27	9.30	4.65	9.30	4.65
	순위	1	3	2	3	5	7	5	7
C 무상 급식	빈도	17	9	7	6	8	4	8	5
	비율	26.56	14.06	9.37	10.93	12.50	6.25	12.50	7.81
	순위	1	2	6	5	3	8	3	7
D 학교 체벌	빈도	20	14	8	7	7	6	5	6
	비율	27.39	19.17	10.95	18.91	9.58	8.21	9.58	8.21
	순위	1	2	3	4	4	6	8	6

10) 8가지 도식을 활용한 논증 이외에 토론자가 대변하고 있는 집단의 진정성을 내세워 동정심 등의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 토론자의 과거 행적과 토론에서 발화되는 내용 간의 불일치를 바탕으로 신념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것을 반박하는 경우, 상대방 주장의 이기성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관습화된 논증 도식으로 유형화하기에는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았으며, 주제 관련성 및 입증 관련성이 떨어지는 맥락에서 발화되는 내용이어서 유형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1) B토론에서 추출된 논증 도식은 다른 토론에 비해 그 수가 적었다. B토론은 전체 토론의 70% 정도는 정책에 대한 친반 대립의 양상을 띠고 있으나 30% 정도는 낙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유와 근거에 토대를 둔 주장보다, 대안적 방법으로서 주장만 제시되면서 논증 도식이 적게 추출되었다.

구분	논제	귀납	추정	연역	인과	기대	권위	분리	유추	
E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	빈도	16	11	5	11	5	6	3	7
		비율	25.00	17.18	7.81	17.18	7.81	9.37	4.68	10.93
		순위	1	2	6	2	6	5	8	4
F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빈도	17	12	6	4	4	6	1	4
		비율	31.48	22.22	11.11	7.40	7.40	11.11	1.85	7.40
		순위	1	2	3	5	5	3	8	5
합계		빈도	100	61	42	40	34	33	30	28
		비율	27.17	16.57	11.41	10.86	9.23	8.96	8.15	7.60
		순위	1	2	3	4	5	6	7	8

귀납 도식, 유사 연역 도식, 인과 도식, 권위 도식, 유추 도식은 논증 도식의 유형에 대한 기준의 여러 논의를 통해서 이미 널리 알려져 온 것들이다. 분리 도식 또한 Perelman & Olbrechts-Tyteca(1969), Breton(1996)에서 논의된 바 있다. 반면 추정에 의한 논증과 기대감에 의한 논증은 새롭게 확인된 도식이다. 이들은 기존 논의에서 언급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고의 연구 대상 자료에서는 그동안 널리 알려져 왔던 인과 논증, 권위 논증, 유추 논증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추정에 의한 논증은 확인 가능한 현실의 여러 가지 정황을 충분히 제시하고 그것들을 고려할 때 어떠한 결정이 통상적으로 합리적인지를 바탕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추정적으로 도출하는 방식이다. 정통 논리학에서는 추정을 바탕으로 하는 논증은 애초부터 잠정적이고 불완전한 추론에 불과 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에 의한 논증은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법률 분야에서 종종 활용되어 왔다. Walton, Reed & Macagno(2010)에서 제안된 많은 도식이 추정을 바탕으로 하는 논증인 까닭도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본고에서도 확인되듯이 추정에 의한 논증은 한국적인 논증 상황에서, 최소한 TV 토론 담화에서는 관습화된 논증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기대감에 의한 논증도 일정 부분 감정적 측면에 호소하는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논리학적 견지에서는 오류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과적 방법을 근간으로 미래를 예측한 후 가정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 ·

부정적 기대감에 기대어 합리적으로 호소한다는 점, 논제 관련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본고에서도 확인되듯이 이미 관습적으로 고착화된 설득 기제라는 점에서 하나의 논증 도식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Breton(1996)은 공명, 호기심, 이익이라는 세 가지 설득 기제를 밝히고 공명과 호기심을 기반으로 한 논증 도식은 제안하면서도, 이익을 기반으로 한 논증 도식은 제안하지 못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그 빈 칸은 기대감에 의한 논증이 채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각각의 토론에서 적극 활용되는 논리 전개 방식은 토론 논제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귀납 논증은 논제의 내용과 상관없이 각각의 토론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었다. 그 활용 정도가 귀납 논증보다 높거나 귀납 논증과 대등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연역 논증은 추정 논증 보다도 활용 정도가 낮았다. 그 이유는 Amossy(2000)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Amossy(2000)는 유사 연역 논증을 대표하는 생략삼단논법은 실제 구술 의사소통 논증 과정에 있어 두 가지 약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생략된 논증 요소들이나 뒤얽힌 논증 관계가 해석 과정을 통해 복원과 함께 재구성되더라도, 그 과정이 복잡하고 지나치게 고비용적이며, 의사소통 차원에서 상호작용과 담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해 논증 효력을 확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Amossy, 2000 : 118~120)

V. 결론

본고는 TV 시사 토론 담화를 전사하여, 논증 메시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논리적 추론 관계나 전제에 활용된 설득 기제의 특징들을 분석하여 논증 도식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 자료로는 16편의 TV 토론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1차 분석 결과, 10편의 토론 자료는 본고의 연구 대상 자료로 적합하지 않았다. 타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주장만 내세우거나 상대의 논증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이

에 6편의 토론 자료(총 262,761자 분량)만을 최종 연구 대상 자료로 확정하고, 논제 관련성과 입증 관련성을 갖춘 최하위 개별 단위 논증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정하게 유형화 가능한 논리 전개 방식을 갖춘 368개의 논증에서, 귀납·추정·연역·인과·기대감·권위·분리·유추 도식, 8개의 논증 도식을 추출할 수 있었다. 전체 368 중 27.17%가 귀납 논증, 16.57%가 추정 논증, 11.41%가 유사 연역 논증, 10.86%가 인과 논증, 9.23%가 기대감에 의한 논증, 8.96%가 권위에 의한 논증, 8.15%가 분리에 의한 논증, 7.60%가 유추에 의한 논증이었다.

실제 논증 상황에서 구현되고 있는 논증 도식을 탐색해 본 본고의 결과는 논증 도식을 이론적 측면에서 가설 연역적으로 유형화해 왔던 기존의 논의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또한 우리의 논증 문화를 반영하면서도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논증 도식을 선정하는 논의를 보다 정교화 하는 데 필요한 기초 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졸고(2011)는 논증 도식 분류 기준을 정비한 후 연역·귀납·유비·인과·추정·기대감·권위 도식을 제안했던 바 있는데, 본고의 결과는 이들 도식이 실제 논증적 소통에서 확인 가능한 것임을 뒷받침해 본다. 다만 분리 도식은 졸고(2011)에서 미처 고려되지 못했던 것이나, Perelman & Olbrechts-Tyteca(1969), Breton(1996)에서 논의되어 왔었으며 실제 논증 담화에서 관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도식으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를 모든 논증적 소통에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TV라는 미디어 매체를 채널로 하는 시사 토론의 장르적 특징이 일반적인 논증적 소통과 다를 수 있다는 점, 논제의 성격에 따라 주로 활용되는 이유나 근거의 종류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토론에 참여하는 패널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논리 추론 유형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차후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연구 자료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12. 2. 21. 투고되었으며, 2012. 3. 9. 심사가 시작되어 2012. 3.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권희경(2008), “토론에서 논증 도식 사용에 따른 비판적 의문과 반박 제기 양상에 관한 연구—초등학교 6학년 소집단 토론을 중심으로—”, 경인교대 석사 논문.
- 김인애(2007), “논증 도식 지도를 통한 논술 교수·학습 방안 연구”, 이화여대 석사 논문.
- 민병곤(2001), “논증 이론의 현황과 국어 교육의 과제”, 『국어교육학연구』, 12, 국어교육학회, 237~285.
- 민병곤(2004), “논증 교육의 내용 연구 : 6, 8, 10학년 학습자의 작문 및 토론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승억 외(2005), 『토론과 논증』, 서울 : 형설출판사.
- 박준호(2003), 『논리와 논증의 이해』, 서울 : 한국문화사.
- 서영진(2011), “논증적 상호 교섭 전략으로서 논증 도식 유형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1, 국어교육학회, 473~503.
- 여정민(2011), “초등학생 토론에서 나타나는 인과 논증의 양상 연구—실용 문제를 논제로 하는 소집단 토론 분석을 중심으로—”, 경인교대 석사 논문.
- 이광모·이황직·서정혁(2006), 『논증과 글쓰기』, 서울 : 형설출판사.
- 이명숙(2011), 『논증의 정석』, 전주 : (주)공공&상상.
- 이성민(2001), “논증이론과 논증분석”, 『한국텍스트과학의 제 과제』, 서울 : 역락.
- 장인봉(2006), “오늘날 서구의 논증 연구”, 『수사학』, 4, 한국수사학회, 239~268.
- 진영란(2005), “6학년 논증 텍스트에 나타난 논증 도식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 학위 논문.
- 최승기·최훈(2008), “논증 평가 기법 개발”, 『수사학』, 9, 한국수사학회, 173~198.
- 최영환(1997), “기능과 전략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 방안”, 『국어교육』, 95, 한국어교육학회, 147~173.
- 한상기(2007), 『비판적 사고와 논리』, 괴주 : 서광사.
- 황정아(2009), “논증 도식을 활용한 논술 교육 방안”, 한국외대 석사학위 논문.
- Amossy, R.(2000), 장인봉 역(2003), L'argumentation dans le discours, Paris : Les Edition Nathan. 『담화속의 논증 : 정치담화, 사상 문학, 허구』, 서울 : 동문선.
- Breton, P. & Gauthier, G.(2000), 장혜영 역(2006), Historie des theories de l'argumentation, Editions la decouverte, 『논증의 역사』,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Maneli, M.(1994), 손장권 역(2006), Perelman's New Rhetoric as Philosophy and Methodology for the Next Century, 『페렐만의 신수사학—새로운 세기의 철학과 방법론』, 서울 : 고려대학교 출판부.

- Toulmin, S. E.(2003), 고현범·임건태 역(2006), *The Use of Argument*, Cambridge, 『논변의 사용』, 서울 : 고려대학교 출판부.
- Walton, D.(2006), 권기대 역(2008), *Fundamentals of Critical Argumentation*, 『논리의 숲 논술의 꽃』, 서울 : 베가북스.
- Williams, J. & Gregory, C. G.(2007), 윤영삼 역(2008), *The Craft of argument*, 『논증의 탄생』, 서울 : 흥문관.
- Breton P.(1996), *L'argumentation dans la communication*, Paris : La Découverte.
- Edward, S. I. & Barbara, W.(2010), *Critical thinking and communication*(sixth ed.), Needham Heights, MA : Allyn and Bacon.
- Eemern, F. et al.(1996), *Fundamentals of Argumentation Theory : A Handbook of Historical Backgrounds and Contemporary Development*,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Ehninger, D. & Brockriede, W.(1960), Toulmin on Argument :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he Quarter Journal of Speech*. 46.
- Fasol, A.(1989), *Essentials for Biblical Preaching*, Grand Rapids : Baker.
- Freeley A. & Steinberg, D.(2005) *Argumentation and debate : Critical thinking for reasoned decision making*(11th ed.) Belmont, CA :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Govier, T.(1988), Ways of Teaching Reasoning Directly, The First British Conference on Informal Logic and Critical Thinking.
- Govier, T.(2001), *The Philosophy of argument*, Yale Press.
- Kienpointer, M(1992), *How to Classify Arguments*, in : Emeren et al.
- Perelman, C. & Olbrechts-Tyteca, L.(1969), *The New Rhetoric : A Tratise on Argumentatio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Vines, J. & Shaddix, J.(1999), *Power in the Pulpit : How to prepare and deliver expository sermons*, Moody Press : Chicago.
- Walton, D. N.(1996), *Argumentation Schemes for Presumptive Reasoning*, Mahwah, NJ : LEA
- Walton, D. N., Reed, C. & Macagno, F.(2010), *Argumentation Scheme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od, J., Irvin, A. & Walton, D.(2000), Argument : Critical Thinking, *Logic and the Fallacies*, Toronto : Prentice Hall.

<초록>

TV 토론 담화 분석을 통한 논증 도식 유형화

서영진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논증적 의사소통 문화에서 관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논증 도식을 유형화해 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논증적 소통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TV 시사 토론 담화를 분석하여 논증 도식의 활용 양상을 분석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 자료 16편의 TV 토론을 1차 분석한 후 6편의 토론 자료(총 262,761자 분량)만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논제 관련성과 입증 관련성을 갖춘 최하위 개별 단위 논증들을 분석하였다. 일정한 논리 전개 방식을 갖춘 개별 단위 논증 368개에서 논증 메시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논리적 추론 관계나 전제에 활용된 설득 기제들의 공통점을 추출하여 논증 도식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귀납·추정·연역·인과·기대감·권위·분리·유추 도식 8개의 논증 도식을 추출할 수 있었다. 전체 368건의 논증 중 27.17%가 귀납 논증, 16.57%가 추정 논증, 11.41%가 유사 연역, 10.86%가 인과 논증, 9.23%가 기대감에 의한 논증, 8.96%가 권위에 의한 논증, 8.15%가 분리에 의한 논증, 7.60%가 유추에 의한 논증이었다.

본고의 결과는 실제 논증 상황에서 구현되고 있는 논증 도식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논증 도식 유형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해 왔던 기존의 논의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우리의 논증 문화를 반영하면서도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논증 도식을 선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TV 토론, 논증 도식, 유형화, 사용빈도

<Abstract>

Categorization of Argumentation Schemes

by TV Debates Analysis

Seo, Young-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argumentation schemes that was used customarily in Korea's argumentative communication by TV debate discourse analysis.

The preliminary results, 10 debates of the 16 debate study data is not suitable. So Only 6 debates (The total amount of transcription 262,761 words) in the final study data were confirmed. Analysis results of argument with relevance to topics and demonstration relevance, researcher could be extracted 8 kinds of argumentation schemes. That is induction scheme, presumption scheme, deduction scheme, cause and effect scheme, feeling of expectation scheme, authority scheme, dissociation scheme, analogy scheme. Induction argumentation is 27.17%, presumption argumentation is 16.57%, deduction argumentation is 11.41%, cause and effect argumentation is 10.86%, feeling of expectation argumentation is 9.23%, authority argumentation is 8.96%, dissociation argumentation is 8.15%, analogy argumentation is 7.60%.

The results of this paper provide opportunity to verify the earlier studies, and will contribute selection of argumentation scheme with high educational value.

【Key words】 TV Debate, argumentation scheme, categorization, using frequency